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동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종철

전화 02-2204-4201 / 팩스 02-2204-4844

보도자료

2022. 7. 28.(목)

제 목

미국 거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에서의 원격영상 증인신문 통해 성폭력 유죄판결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
- 서울동부지검 공판부(부장검사 조영희)는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**피해자가 미국에 거주**하여 혐의 입증이 어려워진 **강제추행 사건**에서, 해외공관(美애틀란타 총영사관)에 출석한 **피해자 상대로 원격영상 증인신문**을 실시하여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전부 **유죄판결**을 이끌어 냈음
- 이는 개정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'**관공서인 영사관**'에서 해외 증인에 대하여 **원격영상 증인신문**을 실시하여 **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사례**로서, 검찰은 재판부에 **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**하고, **재판부 및 외교부와 협업**하여 해외 거주 피해자를 상대로 해외공관 내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마쳐 증거로 인정받았음
- 앞으로 해외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 영상증인신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검찰은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**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**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

1

피고인 및 범죄사실

- 피고인 : A○○(남, 28세, 방글라데시)
- 범죄사실 : '21. 4.경 제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, 침대에서 잠을 자려던 피해자(여, 외국 국적)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강제추행
- ※ 피고인과 피해자는 국내 거주했던 외국인들로 국내 A대학교 학위과정 중 알게 된 사이임

2

공판진행 경과

- '21. 9. 29. 피고인 불구속 기소
- '21. 11. 28. 제1회 기일, 피고인 강제추행 혐의 부인
- '22. 1. 20. 제2회 기일, 해외 거주 피해자 증인신문 방법 검토
- ※ 피해자는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국내 법정출석이 곤란하였음
- '22. 3. 22. 검찰,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 주장
- ※ 원격영상 증인신문은 '21. 8.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,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및 재판예규인 「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제2조에 따라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 주장

형사소송법 제165조의2(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)

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 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.

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21-2)

제2조(정의)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중계시설”이라 함은 법원이 직접 구비하거나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요청하여 이용하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로서 통신망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.

- '22. 3. ~ 5. 검찰, 해외공관 증인신문 요청 및 사전절차 진행

피해자 국선변호인 통해 피해자 출석 의사 확인 → 재판부에 피해자 주거지 (플로리다) 인근 공관인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의 영상 증인신문 요청 → 출석 안내·지원 → 법무부 국제형사과 협의(주권침해 소지 등 적법성 확인) → 외교부 협의(재판부가 법원행정처를 거쳐 외교부에 요청) 통해 영사관에 협조 요청 및 일정 조율

- '22. 5. 10. 공판준비기일에 비디오 증계장치 장비 테스트 등 신문 준비
- '22. 6. 14. 영상재판 프로그램 통해 법정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연결하여 피해자 증인신문
 - ※ 해외공관 컴퓨터에 영상재판 프로그램(wevinar.scourt.go.kr)을 설치하여 진행
- '22. 7. 21. 피고인 1심 유죄 선고(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)

3 의의 및 향후 계획

-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부동의하여 피해자 증언이 결정적인 상황에서, 검사가 해외거주하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고,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해외공관에서의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절차 진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유죄판결이 선고된 최초 사례임
- 앞으로 해외거주 주요 증인에 대한 원격영상 증인신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, 검찰은 향후에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한 해외공관 원격영상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임
 - ※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해외공관 등에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홍보할 예정임 ☐